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8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정혜경·전종덕·김 윤

서미화 · 허성무 · 백승아

윤종오 • 박홍배 • 조 국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른 근로자"를 "따른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 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의 생계비"를 "가구 생계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등의 산정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제2조(정의)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				
기준법」 제2조에 <u>따른 근로자</u> ,	<u>म</u>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른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			
	제공자를 포함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분) ① 최저임금은 <u>근로자의</u>	분) ① <u>가구 생계</u>			
<u>생계비</u> , 유사 근로자의 임금,	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 <u>이 경우</u>	·. <u><</u> 후단 삭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				
<u>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최저임금액) ①・② (생	제5조(최저임금액)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3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				
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				
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생략)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를 거쳐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 ④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 후생비 등의 산정을 위해 노사 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세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 제>			

2. (현행과 같음)